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 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정안 국회통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과 비살균 턱주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며, 또한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

정명령제도를 개선하고,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 공사 수주경합의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이 폐지 또는 개선됨으로써 각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新 · 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1條〉 辯護士法</p> <p>第19條(報酬) 辯護士의 報酬基準은 大韓辯護士協會 가 이를 정한다.</p> <p>第47條(準用規定) 第18條·第19條·第23條 내지 第 27條·第29條 및 第8章의 規定은 法務法人에 관하 여 이를 準用한다.</p> <p>第63條(會則의 記載事項)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 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辯護士의 報酬基準에 關한 事項 3. ~ 6. (생 략) 	<p>〈削 除〉</p> <p>第47條(準用規定) 第18條</p> <p>.....</p> <p>第63條(會則의 記載事項)</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現行과 같음) 〈削 除〉 3. ~ 6. (現行과 같음)
<p>〈第2條〉 行政士法</p> <p>第12條(登録取消) 大韓行政士會는 行政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登錄을 取消하여 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 략) 6. 第1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委囑人으로부 	<p>第12條(登録取消)</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現行과 같음) 〈削 除〉

現 行	改 正 案
<p><u>터</u> 金品을 받았을 때</p> <p>7.·8. (생 략)</p> <p>第19條(手數料) ① 行政土는 그 業務에 관하여 委囑人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를 받는다.</p> <p>② 第1項의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大韓行政土會가 이를 정한다.</p> <p>③ 行政土는 그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手數料이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委囑人으로부터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第35條(罰則) ① (생 략)</p> <p>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囑人으로부터 金品을 받은 者</p> <p>2. ~ 6. (생 략)</p> <p><第3條> 公認會計士法</p> <p>第14條(報酬) 公認會計士는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金額을 超過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p> <p><第4條> 稅務士法</p> <p>第15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및 報酬) ① (생 략)</p> <p>② 稅務士는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金額을 超過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p> <p><第5條> 酒稅法</p> <p>第5條(酒類製造의 免許) ① · ② (생 략)</p> <p>③ 濁酒(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濁酒를 제외한다)의 供給區域은 酒類製造場所在地의 市(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 · 郡의 行政區域으로 한다. 다만, 酒類供給事情과 酒類保全상 그 供給區域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同一地方國稅廳管內에 한하여 당해地方國稅廳長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④ ~ ⑦ (생 략)</p> <p>第45條(酒類業團體) ① ~ ③ (생 략)</p> <p>④ 酒類業團體는 다음의 事業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7.·8. (現行과 같음)</p> <p><削除></p> <p>第35條(罰則) ① (現行과 같음)</p> <p>②</p> <p><削除></p> <p>2. ~ 6. (現行과 같음)</p> <p><削除></p> <p>第15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① (現行과 같음)</p> <p><削除></p> <p>第5條(酒類製造의 免許) ① · ② (現行과 같음)</p> <p><削除></p> <p>④ ~ ⑦ (現行과 같음)</p> <p>第45條(酒類業團體) ① ~ ③ (現行과 같음)</p> <p>④</p> <p>1.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2. 酒類의 價格이나 規格의 統一 또는 檢查에 關한 事業	〈削 除〉
3. 共同販賣에 關한 事業	〈削 除〉
4. (生 략)	4. (現行과 같음)
⑤·⑥ (生 략)	⑤·⑥ (現行과 같음)
<第6條> 關稅士法	
第11條(報酬) ① 關稅士會는 關稅士의 職務에 관한 報酬와 그 上限線(이하 “關稅士報酬基準”이라 한 다)을 정하여 關稅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1條(報酬) 〈削 除〉
② 關稅士는 關稅士報酬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	〈削 除〉
③ 關稅士會는 關稅士報酬基準을 정함에 있어 業務別 節次의 難易, 貨物의 수량·금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削 除〉
④ 關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削 除〉
⑤ 關稅士는 당해 事務所안의 보기 쉬운 곳에 關稅士報酬基準을 게시하여야 한다.	〈削 除〉
⑥ (生 략)	⑥ (現行과 같음)
第18條(認可의 取消 등) 關稅廳長은 關稅士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18條(認可의 取消 등)
1. (生 략)	1. (現行과 같음)
2.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0條 第1項, 第11條第2項·第5項·第6項, 第12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11條第6項
3. (生 략)	3. (現行과 같음)
第20條(認可의 取消 등) 關稅廳長은 通關取扱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通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20條(認可의 取消 등)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0條 第1項, 第11條第2項·第5項·第6項, 第12條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1. 第11條第6項
2. ~ 4. (生 략)	2. ~ 4. (現行과 같음)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第29條(罰則)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 2. (생 략)</p> <p><u>3. 第11條第2項(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報酬를 받는 者</u></p> <p>4 ~ 6. (생 략)</p> <p>第31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생 략)</p> <p><u>2. 第11條第5項(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u></p> <p>3. ~ 5.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第29條(罰則)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p> <p>1. · 2. (現行과 같음) <u>〈削 除〉</u></p> <p>4 ~ 6. (現行과 같음)</p> <p>第31條(過怠料) ①</p> <p>1. (現行과 같음) <u>〈削 除〉</u></p> <p>3. ~ 5. (現行과 같음) ② ~ ⑤ (現行과 같음)</p>
<p><第7條> 保險業法</p> <p>第198條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 保險事業者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保險料率의 算出과 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효율적인 管理 · 이용을 위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 保險料率算出機關을設立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保險料率算出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p> <p>1. <u>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u></p> <p>2 · 3. (생 략)</p> <p>4. <u>保險料率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u></p> <p>5. (생 략)</p> <p>④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事業者가 適用할 수 있는 保險料率을 算出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認可를申請할 수 있다.</p> <p>⑤ 保險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率算出機關이 認可를 받은 保險料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의 變更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 ⑦ (생 략)</p>	<p>第198條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 保險金의 지급에 충당되는 保險料(이하 “純保險料”라 한다)를 決定하기 위한 料率(이하 “純保險料率”이라 한다)의 公正하고 합리적인 算出과</p> <p>② (現行과 같음)</p> <p>③</p> <p>1. 純保險料率</p> <p>2 · 3. (現行과 같음) <u>〈削 除〉</u></p> <p>5. (現行과 같음)</p> <p>④</p> <p>..... 純保險料率</p> <p>⑤</p> <p>..... 純保險料率</p> <p>(純保險料에 한한다)</p> <p>⑥ · ⑦ (現行과 같음)</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⑧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契約者の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p> <p>1. 保險料率算出에 관한 資料</p> <p>2. (생 략)</p> <p>⑨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를 보유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情報를 제공받아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적용할 保險料의 算出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⑩ (생 략)</p> <p>第198條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 의義務) 第198條의2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 공받은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를 이용하여 保險料率의 算出 또는 適用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を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⑧</p> <p>.....</p> <p>.....</p> <p>1. 純保險料率算出</p> <p>2. (現行과 같음)</p> <p>⑨ 純保險料率</p> <p>.....</p> <p>.....</p> <p>..... 純保險料</p> <p>⑩ (現行과 같음)</p> <p>第198條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 의義務)</p> <p>.....</p> <p>..... 純保險料率</p> <p>.....</p> <p>.....</p>
<p><第8條> 농수산물수출진흥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지정 생산자”라 함은 수출단지내에서 지정품 목을 생산하는 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p> <p>1. ~ 3.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제5조(지정품목 생산자의 지정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 이외의 지역 또는 수면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의 생산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p> <p>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削 除〉</p>
<p>제6조(조합의 지정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p>	<p>〈削 除〉</p>

現 行	改 正 案
<p>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은 지정품목을 생산·수집·가공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p>	<p>〈削 除〉</p>
<p>제7조(수집·가공업자의 지정 등)</p> <p>① 지정품목을 수집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집·가공업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가공의 지정을 받은 조합(이하 "지정수집·가공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지정품목을 수집 또는 가공할 수 없다.</p>	<p>〈削 除〉</p>
<p>제8조(수출업자의 지정 등)</p> <p>① 지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수출업자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전항의 요청을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6조제3항 및 이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전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정을 받은 조합(이하 "지정수출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지정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p>	<p>〈削 除〉</p>
<p>제9조(지정의 신청)</p> <p>①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항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의 생산자·수집가공업자 또는 수출업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p>	<p>〈削 除〉</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u>령으로 정한다.</u></p> <p>제10조(지정품목 매매의 사전계약)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정 생산자와 지정수집·가공업자 및 지정수출업자 상호간에 생산·수집 또는 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준칙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지정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削 除〉</p>
<p>제11조(생산·판매등의 조정) 농림부장관은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 생산자·지정 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수량의 조정, 생산품목의 규격, 품질 및 가격의 조정과 판매선의 지정 2. 수집 가공량의 조정·수집 가공시기 및 가격의 조정과 판매선의 지정 3. 수출량의 조정과 수출가격·수출지역·수출시기 기타 수출조건의 조정 	<p>〈削 除〉</p>
<p>제12조(국내 출하가격의 협정)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로 인하여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 생산자와 지정수집·가공업자에게 상호협정에 의하여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출하가격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削 除〉</p>
<p>제13조(수출단지등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수출단지와 제5조의 지정 생산자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정품목의 생산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생산 기술의지도·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수출단지의 지원)</p> <p>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p> <p>.....</p> <p>.....</p> <p>.....</p> <p>.....</p> <p>.....</p>
<p>제14조(지정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정수</p>	<p>〈削 除〉</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집·가공업자 및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지정품목의 수집·가공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융자하게 하거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제15조(제수수료의 감면) 정부는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u></p> <p><u>제16조(가공시설 임대에 관한 특례)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가공계약을 체결한 지정가공업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정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지정품목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가공업자 또는 기타 관리자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가공시설을 임대하고 그 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7조(기준가격의 예시)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품목의 생산비 및 판매 또는 수출이윤과 일반농산물 가격 기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품목에 대한 지정 생산자의 판매가격이나 지정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의 기준(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u></p> <p><u>② 농림수산부장관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된 기준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u></p> <p><u>③ 기준가격의 예시와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8조(행정명령)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수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명할 수 있다.</u></p> <p><u>1. 지정품목의 생산자에 대한 지정품목의 출하</u></p> <p><u>2. 지정수집·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지정품목의 매수·가공·검사 또</u></p>	<p>〈削除〉</p> <p>〈削除〉</p> <p>〈削除〉</p> <p>〈削除〉</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u>는 판매</u> <u>3.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지정품목의 매수 또는 수출</u> <u>제32조(보고서의 제출 및 검사)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보고서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u>제34조(지정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u> <u>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u> <u>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출하가격의 협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u> <u>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u> <u>②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허가·면허 기타 처분권자에게 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u> <u>제34조의2(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u>제3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배한 자</u> <u>제38조(과태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u>〈削 除〉</u>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② (생 략)	<p>100分의 80이내</p> <p>2. 2000年 : 1998年に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分의 60이내</p> <p>3. 2001年 : 1998年に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分의 40이내</p> <p>③ (現行 第2項과 같음)</p>
<第12條> 對外貿易法	<第43條(調整命令) ① 產業資源部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第43條(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輸出入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號의 범위안에서 貿易去來者에게 輸出 또는 輸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p>1. 輸出基盤의 안정, 새로운 商品의 開發 또는 海外市場의 開拓에 이바지할 것</p> <p>2. 다른 貿易去來者의 權益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p> <p>3. 物品의 輸出·輸入의 秩序維持를 위한 目的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② (생 략)	<p>1. 貿易에 관한 政府間 協定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방산물자를 輸出하는 경우</p> <p>3. 기타 物品의 輸出의 公正한 競爭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對外信用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現行과 같음)</p>
<第13條> 鹽業組合法	<第23條(事業의 種類) ① 조합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一部를 행한다.
第23條(事業의 種類) ① 조합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一部를 행한다.	<p>1. ~ 7. (생 략)</p> <p>8. 團體契約</p> <p>9 ~ 13. (생 략)</p> <p>② · ③ (생 략)</p>
第27條(團體契約) ① 조합은 조합員을 위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第23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團體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p>1. ~ 7. (現行과 같음)</p> <p>〈削除〉</p> <p>9 ~ 13. (現行과 같음)</p> <p>② · ③ (現行과 같음)</p> <p>〈削除〉</p>
第46條(決算書의 제출등) ① (생 략)	<第46條(決算書의 제출등) ① (現行과 같음)
② 조합은 다음 각號의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大	②

現 行	改 正 案
<p>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週間以内에 通商 産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5. 團體契約의 締結 6. (생략) ③ · ④ (생략)</p>	<p>.....</p> <p>1. ~ 4 (現行과 같음) <u>〈削除〉</u> 6. (現行과 같음) ③ · ④ (現行과 같음)</p>
<p><第14條> 辨理士法</p> <p>第14條(辨理士會則) ① 辨理士會는 會則을 作成하 여 任員과 會員, 會議에 關한 事項, 감정에 關한 사항, 辨理士의 品位向上 및 報酬에 關한 事項, 會 則의 變更에 關한 事項 其他 會務의 處理에 關하 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第14條(辨理士會則) ①</p> <p>..... 辨理士의 品位向上에 關한 사항</p> <p>.....</p> <p>② (現行과 같음)</p>
<p><第15條> 濟州道開發特別法</p> <p>第36條(農·林·畜·水產物需給安定審議會) ①</p> <p>農產物·林產物·畜產物 및 水產物의 적정한 生 產과 일정한 수준의 價格維持에 關한 사항을 審 議하기 위하여 道에 農漁民·農漁民團體의 代表 者 등으로 구성된 農產物·林產物·畜產物 및 水產 物需給安定審議會를 두어 이를 운영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구성·운영 기 타 필요한 사항은 道條例로 정한다.</p>	<p><u>〈削除〉</u></p>
<p><第16條> 建築士法</p> <p>第26條(業務의 報酬) 建築士事務所 開設者가 그 業務에 關하여 委託者에게 請求할 수 있는 報酬 의 基準은 建築士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 를 받아 이를 정한다.</p>	<p><u>〈削除〉</u></p>
<p>第28條(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 또는 建築士 등의 業務停止命令)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建築 士事務所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당해 建築士事務所에 대하여 登錄을取消하 거나 建築士事務所開設者(第23條第8項 各號에 해 당하는 建築士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 1號 · 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p>	<p>第28條(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 또는 建築士 등의 業務停止命令) ①</p> <p>.....</p>

現 行	改 正 案
<p>建築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報酬基準의 상한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은 때</p> <p>8. ~ 11. (생략)</p> <p>② · ③ (생략)</p>	<p>1. ~ 6. (現行과 같음)</p> <p>〈削除〉</p> <p>8. ~ 11. (現行과 같음)</p> <p>② · ③ (現行과 같음)</p>
<p>〈第17條〉 海外建設促進法</p> <p>第14條(受注競合調整)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동일한 海外工事에 대하여 2人이상의 海外建設業者 상호간의 受注競合으로 인한 受注秩序의 문란이나 對外信用의 損傷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하거나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또는 調整의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關係機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削除〉</p>
<p>第15條(進出業者の 지정)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상호간의 過當競爭의 방지 및 海外建設市場의 與件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家別 또는 地域別로 당해 國家 또는 地域에 進出할 海外建設業者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の 건실한 경영과 海外工事의 不實遂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外建設業者를 海外工事を 都給 받을 수 있는 者와 그로부터 下都給을 받을 수 있는 者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削除〉</p>
<p>第24條(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p> <p>1. ~ 3. (생략)</p> <p>4. 會員의 品位保全 및 海外建設活動의 自律的規制</p> <p>5. ~ 8. (생략)</p>	<p>第24條(協會의 業務)</p> <p>.....</p> <p>1. ~ 3. (現行과 같음)</p> <p>4. 會員의 品位維持</p> <p>5. ~ 8. (現行과 같음)</p>
<p>第41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第41條(過怠料) ①</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1. ~ 4. (생략) <u>5. 第14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요구하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者</u> 6. (생략) ② ~ ⑤ (생략)</p>	<p>1. ~ 4. (現行과 같음) <u>〈削除〉</u> 6. (現行과 같음) ② ~ ⑤ (現行과 같음)</p>
<p><第18條> 公認勞務士法</p> <p>第10條(報酬) ① 開業勞務士는 그職務遂行에 관하여 <u>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手數料를 받는다.</u> ② 開業勞務士는 <u>의뢰받은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出張 또는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實費를 받을 수 있다.</u> ③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手數料의料率 및 實費의 범위 등 報酬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4條의規定에 의한公認勞務士會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p>第13條(금지행위) 開業勞務士와 그職務補助員은 다음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3. (생략) 4. 第10條의規定에 의한手數料 또는 實費등報酬에 관한 기준을 초과하여 <u>金品을 받거나 그외에謝禮·贈與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金品 기타 이익을 받는行爲</u> 5. (생략)</p>
<p>第16條(登錄證 등의 게시) 開業勞務士는 登錄證·手數料料率表 기타 労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그事務所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p>	<p>第16條(登録證等의 게시) 登錄證</p>
<p>第28條(罰則) ① · ② (생략) ③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100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1. <u>第13條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者</u> 2. (생략)</p>	<p>第28條(罰則)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 1. 第13條第5號 2. (現行과 같음)</p>